

## 산업체위탁교육규정

제정 : 2000.03.01

개정 : 2004.03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03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「학칙」 제59조에 의한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2조(산업체의 범위)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국가·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단체
2. 「교육법」 제81조에 규정된 학교 <개정 2021. 12. 01.>
3. 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·방송국
4.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(시설강습소)
5. 의료기관
6. 5인 이상 고용 산업체(「근로기준법」 제94조) <개정 2021. 12. 01.>
7.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
제3조(위탁형태 및 위탁학생수) ①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학과별로 위탁하거나 둘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학과별로 위탁할 수 있다.

② 산업체의 위탁학생 수는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50%,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(학급편성) 위탁생은 15명 이상의 별도 학생을 편성하여 운영한다. 다만, 별도학급 편성상 15명 미만일 때도 총장이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5조(설치학과) 「학칙」에 의해 설치된 학과에 의하되 산업체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과와 관련된 별도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6조(위탁생의 선발기준) ① 위탁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. 다만, 산업체부설 고등학교,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특별학급,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
에 대하여는 재학 기간과 산업체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을 산업체 근무기간으로 본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위탁생은 당해 산업체에서 추천하여 본 대학교에 소정의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한다.

③ 위탁생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에 지원할 수 있으나, 가급적 산업체 근무직종과 연계지원함을 권장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7조(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) ① 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「학칙」에 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위탁생이 위탁산업체의 동의없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위탁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적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8조(위탁생의 교과목 이수)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는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한 졸업소요 학점을 기준으로 하고,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과교수회의 심사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해당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
1.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
2. 산업체내 연구소 및 사내 훈련기관에 의한 전공분야 교과목의 이수 및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 이수
3. 전문대학교 및 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 의한 전공 교과목 이수(전문대학교 부설 특별과정 및 평생교육과정 등 포함)
4. 기능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 이수
5. 동일 분야의 기사 2급 이상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
6. 동일 직무에 일정 기간 근무 경력의 실험·실습 관련 교과목 <개정 2021. 12. 01.>

제9조(위탁교육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) ①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의 책임 하에 본 대학교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당해 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 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0조(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 ① 위탁교육 산업체와 본 대학교 간 산학협동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상호 협동을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
2.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 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의 추진
3.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

4.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
  5.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
- ②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1. 산업체내의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시설이 가능한 경우 :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 학급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  2.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: 산업체 임직원중 적격자를 총장이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1조(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대학교에 위탁교육 심의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위원은 산업체 임직원 및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,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위탁의뢰 산업체 적부에 관한 사항
2. 위탁생의 선발 기준
3.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 방법
4. 위탁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을 가진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6. 학교와 산업체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위탁교육계약서) [별첨서식 제1호]

제13조(기타사항)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3-3-3 산업체위탁교육규정

---

부 칙  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 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서식 제1호]

## 위탁교육 계약서

대원대학교(이하 “갑” 이라 칭한다)와 \_\_\_\_\_ (이하 “을” 이라 칭한다)는  
고등교육법 제40조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“을” 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“갑” 에 위탁함에 따  
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(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교과  
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.

②위탁의 분야별 위탁생수는 다음과 같다.

년도별(시작년도)	분 야(학과)	위탁생 수
20 학년도		

제3조(위탁생의 자격) 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

② “을” 에 재직 중인 자로 현재 “을” 에 소속되어 있는 자

제4조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 ① 위탁의 대상자는 “을” 에서 추천한다.

② “갑” 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“을” 및 “갑” 이 자율적  
으로 정한다.

제5조(위탁생의 학급편성) 별도 학급으로 편성한다.

제6조(교육과정의 편성)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 
“갑” 은 “을” 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“갑”  
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“갑” 의 학칙에 따른다.

제7조(산업체의 시설 사용) 산업체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,  
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을 별표로 첨부한다.

제8조(산업체 임직원의 교수 요원 활용) 위탁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체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비 및 등록)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“갑”의 학생 납입금 수준을 원칙으로 하되, “을”과 협의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, 이 경우 조정률을 명문화할 수 있다.  
②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는 대학교의 등록기간내 위탁생이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생의 신분) 본 약정에 의거 입학한 위탁생은 “갑”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11조(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표로 한다.

제12조(위탁교육 협력 위원회) 약정에 의거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항에 조직과 구성,②항에 기능(위원회 소관 사항)을 규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- ① 본 계약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② 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로 재계약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2 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**대 원 대 학 교**

**총 장**